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028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02.21. kee1979@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9.13.

[조박사 소머리국밥]

정 보 공 개 서

[조박사 소머리국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조박사 소머리국밥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시 서구 담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2-223-923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2-563-923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32-223-923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조박사 소머리국밥	조박사 소머리국밥	인천시 서구 담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4.06.25.	김은이	032-223-9234	032-563-9235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40-03-0690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김은이	조박사 소머리국밥	인천시 서구 담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은이	032-223-9234	032-563-923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조병태	조박사 소머리국밥	인천시 서구 담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은이	032-223-9234	032-563-923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조박사 소머리국밥]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조박사 소머리국밥	
상 호	조박사 소머리국밥 oo 점	

상표(서비스표)		등록 40-2076241-0000
광고 등 그 밖의 기타 상표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단위: 천원, 이하 절삭,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008,076	999,923	8,152	478,065	44,196	35,620
2022년	991,915	894,060	97,855	562,811	70,735	39,702
2023년	975,403	798,105	177,298	512,142	76,578	36,202
※ 별첨1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은이	대표	2014.6.25.~현재	대표	회사총괄
관련임원	조병태	이사	2014.6.25.~현재	이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2

※ 당사의 임원은 비급여 임원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조박사 소머리국밥]외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서비스표)	영업표지 사용대가 수수	출원 2023.3.21. 등록 2023.9.1.	출원 40-2023-0049668 등록 40-2076241-0000	김은이	2033.9.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3년 5월 2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년 6월 25일)

2. [조박사 소머리국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박사 소머리국밥	조박사 소머리국밥	김은이	2023.5. ~ 현재	소머리 고기, 수육, 국밥 등의 식사료를 판매하는 업종

3. [조박사 소머리국밥] 업종

영업표지	업종	
조박사 소머리국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소머리 고기, 수육, 국밥 등의 식사료를 판매하는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3	2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	1	1	-	1	1	-	1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0	3	0	1	0	2

※ 자세한 사항은 별첨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조박사 소머리국밥]외에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조박사 소머리국밥]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	166,936	4,173	172,432	5,748	161,439	3,229	
서울	-	해당 없음	-	-	-	-	-	
부산	-	해당 없음	-	-	-	-	-	
대구	-	해당 없음	-	-	-	-	-	
인천	-	해당 없음	-	-	-	-	-	
광주	-	해당 없음	-	-	-	-	-	
대전	-	해당 없음	-	-	-	-	-	
울산	-	해당 없음	-	-	-	-	-	
세종	-	해당 없음	-	-	-	-	-	
경기	1	5곳 미만	-	-	-	-	-	
강원	-	해당 없음	-	-	-	-	-	
충북	-	해당 없음	-	-	-	-	-	
충남	1	5곳 미만	-	-	-	-	-	
전북	-	해당 없음	-	-	-	-	-	
전남	-	해당 없음	-	-	-	-	-	
경북	-	해당 없음	-	-	-	-	-	
경남	-	해당 없음	-	-	-	-	-	
제주	-	해당 없음	-	-	-	-	-	

※ 운영기간 6개월 미만은 산정에서 제외를 하여야 하나 전체 평균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연환산 매출액(=매출액/운영개월*12)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의 연평균매출액 산정근거는 환산추정치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귀하의 장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8.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	149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총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체국	서인천 우체국	인천시 서구 서곶로 318	032-590-911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조박사 소머리국밥]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외 품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증권대체하면 미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가맹비	영업비밀 전수비	4,400	계약 체결 시 예치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소멸되지 않는 비용에 한정	최초 계약에 한함
	오픈 전후 지원업무	1,100			
최초 교육비		2,200		교육 후 소멸	

※ 교육비는 1인 기준입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과 상계되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 경우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3,000	계약체결당일 예치	미지급 채무액, 손해배상 예정 등의 담보	

※ 계약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증권가액을 삼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당사에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박사 소머리국밥]을 운영하기 위해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합계		10,700
가맹비	영업비밀 전수비	4,400
	오픈 전후 지원업무	1,100
최초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현금)		3,000

※ 계약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예치가맹금은 계약이행보증금 가액을 제외한 **7,700천원(부가세 포함)**입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

귀하가 창업 시 예산을 고려하는데 참고하도록 권장평수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창업비용을 예상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 추정비용은 당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에 불과한 것이기에 면적, 점포가 처한 내·외부 환경, 설비의 추가 여부 등의 변수로 실제 견적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2,720	2,757				99㎡ 기준
인테리어	당사 또는 자율	59,400	1,980	아래 주1참조	착공 이전	착공 이후	
간판		5,500	183		착공 이전	착공 이후	
의탁자		1,320	44		주문 전	주문 후	
기계 및 장비		8,800	293	가맹계약 체결 시 선입금	주문 전	주문 후	
기타소모품		4,400	147		발주 전	발주 후	
초도물품		3,300	110		주문 전	주문 후	
POS,키오스크	지정업체	임대	임대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주2참조

<주1> 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해당 비용의 50%

나. 인테리어 착공일로부터 10일 40%

다. 인테리어 완공일(간판 부착 시 완공일로 함) 1일 전 10%

<주2>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POS와 키오스크 지정업체는 TSHC이며, 월간 임대비용은 33천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상기의 인테리어, 간판(표준 시안으로 강제 됨), 기계 및 장비, 가구, 소모품, 초도물품 금액은 당

사가 99㎡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계약 체결 후 매장 실측을 통하여 세부견적을 별도로 산출해 드리니 반드시 세부견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인테리어, 간판(4*1M)은 자율 시공이 가능하며, 기계 및 장비도 자율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율 구매 시 당사의 매뉴얼에 따른 시공과 기계 및 장비의 사양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귀하가 인테리어 등을 직접 시공할 경우 당사에 감리비로 착공 7일 전에 전용면적 3.3㎡ 당금이 십이만원(W220,000-부가세 포함)을 선입금하여야 합니다.
- ※ 인테리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철거, 실외공사, 파사드(테라스공사), 냉난방기(공조), 덕트 공사, 전기증설공사, 소방, 가스, 화장실, 계단 등은 별도 견적으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자율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지역 선정 → 당사의 가맹점들과 영업지역 중복여부 확인 → 시장 분석 → 인허가 요건 점검 → 출점가능여부 회사 → 가맹희망자 동의여부 구함 → 당사의 개점 승인

- ※ 가맹점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가 당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당사에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청결 및 서비스, 품위를 준수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 8) 당사는 가맹금의 분납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매월)	당사	순매출액의 1.1%	익월 5일	기간 도래 전	기간도래 후	아래※1
물품 대금	당사	주문가액	선결제	주문 전 취소	주문 후	
광고 분담금	당사	아래※2 설명참조	명세서 수령 후 2주내	광고 미시행	광고시행 후	
교육 훈련비	당사	실비 정산	정산 후 고지	교육 미 실시	교육 실시 후	재교육시
지연이자	당사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미반환	대금연체 시	

※1. 순매출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2. 광고분담금 산정기준

- 가맹점 모집광고일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
- 가맹점 매출증진을 위한 브랜드 광고와 서비스/상품광고일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 사업자가 50%를 각각 부담
- 가맹점 모집광고와 가맹점 매출증진을 위한 브랜드 광고와 서비스/상품광고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60%, 가맹점사업자 40%를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위생과 청결 관리	매장 내 청결 및 위생관리	수시	
POS, 키오스크 관리	매출 관리	수시	
물품 등 및 상품 등의 관리	물품 등의 보관과 판매 상품의 품질 관리	수시	
접객서비스	대고객 서비스 상황 관리	수시	

※ 영업외 매장상태 및 서비스 등 관리·감독 사항은 V-8-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을 사유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 및 의무 사항에 대하여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예정대상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조치합니다.

(2) 전항의 승계에 따른 계약조건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조건과 동일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가맹금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표지,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표지, 지식재산권 등이 만료로 인한 소멸, 변경, 효력 상실을 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에 의한 가맹본부의 대체수단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 계약과 동일한 가맹비, 보증금 등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 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오픈 전후 업무지원 경비, 최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양도인이 반환받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시 제외) 등을 부담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 당사와의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사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부착물을 가맹점사업자의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한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조박사 소머리국밥]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4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품목별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 및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지역별로 지역상권에 맞추어 예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4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소머리 고기, 수육, 국밥 등의 식사류를 판매하는 업종	조박사 소머리국밥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 로드샷의 경우 점포반경 500M 나. 특수상권의 경우 해당 특수상권의 건물 전체	가맹계약서에 별첨으로 영업지역 표시

※ 특수상권이라 하면, 전용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마트, 대형백화점, 복합역사, 놀이공원, 대형쇼핑몰(지하철 역내 대형 상가구역 포함) 등을 말합니다.

당사는 상기의 표와 같이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조박사 소머리국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23	77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가맹계약이 갱신된 경우 [2]년씩 갱신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에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당사의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 사업자가 제22조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3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2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5조 제2항의 전단을 위반한 경우	

[물품 등 공급의 중단 요청]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7조 제2항의 가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의 대금지급 또는 기타 본 계약 상 대금지급을 연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제1항 후단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충당을 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를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거나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4항의 통지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제1항의 매뉴얼에 따르지 않거나 지정된 사양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기간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의2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통지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의3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통지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제41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상에 따른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6개월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기타 본 계약상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당사의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당사의 해지권)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본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당사의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 수정에 관하여 합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 영업지역 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을 경우		제18조 제2항 제44조 제5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에만 가맹점운영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 계약위반에 따른 벌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양수도)를 모두 승계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되며, 가맹비 중 오픈 전후 업무지원 경비, 최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양도인이 반환받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시 제외) 등을 부담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대리행사 및 위탁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맹점운영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사유 발생 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 통지 → 본부의 승인 → 모든 권리·의무 이전	가맹계약서 제43조 참조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이 속한 특·광·시·도(광역자치단체) 또는 경계가 연접한 특·광·시·도에서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소머리 고기, 수육, 국밥 등의 식사류를 판매하는 업종	경업 불허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 11시간 이상이며, 영업시간은 상권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월2회 휴무, 3일 이상 연속 휴업 금지	

※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경우, 즉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해당 사항 없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위생과 청결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매장의 위생 및 청결 상태 검사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당사의 슈퍼바이저 및 가맹점 관리 담당자	
POS 시스템 및 수발주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POS 사용현황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물품 등 및 상품 등의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상품 등 판매 상황, 물품 등의 관리상태, 신선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접객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점사업자, 직원 등의 대고객 서비스 현황파악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조박사 소머리국밥]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브랜드	50%	50%	광고비 부담금은 다음 분기 첫달 말일까지 청구하고, 2주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상품·브랜드+가맹점사업자모집	60%	40%		
	가맹점사업자모집	100%	-		
판촉 행사	전국 규모 또는 지역 단위 행사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		별도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가맹계약서 제2조

제7호에 의한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 유출할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의 해지 및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참고할 것)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는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6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귀하가 본 계약 위반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물품사용 대금의 12% + 월평균 로열티) * 잔여개월 수 * 10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운영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비의 100%로 전단의 산정기준을 대체합니다.

- 1) 귀하가 제3조 제3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귀하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귀하가 제5조 제2항의 전단을 위반한 경우
- 4) 귀하가 제7조 제2항의 가맹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납된 경우
- 5) 귀하가 제8조의 대금지급 또는 기타 본 계약 상 대금지급을 연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6) 귀하가 제9조 제1항 후단의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충당을 하지 않은 경우
- 7) 귀하가 제27조 제1항의 전단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당사는 귀하가 본 계약 위반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물품사용 대금의 12% + 월평균 로열티) * 잔여개월 수 * 70%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운영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비의 70%로 전단의 산정기준을 대체합니다.

- 1) 귀하가 제19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 2) 귀하가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3) 귀하가 제30조의2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통지를 위반한 경우
- 4) 귀하가 제30조의3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통지를 위반한 경우

○ 당사는 귀하가 본 계약 위반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종료 또는 해지월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물품사용 대금의 12% + 월평균 로열티) * 잔여개월 수 * 20%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합니다. 다만, 운영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맹비의 20%로 전단의 산정기준을 대체합니다.

- 1) 귀하가 제10조를 제1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경우
- 2) 귀하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3) 귀하가 제13조 제1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 하거나 제3항을 위반한 경우
- 4) 귀하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 귀하가 제28조 제1항의 매뉴얼에 따르지 않거나 지정된 사양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6) 귀하가 제29조를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기간을 위반한 경우
- 7) 귀하가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8) 귀하가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점포 오픈 전에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귀하는 오픈개시 과정까지 당사가 집행한 비용(인건비, 기타 소요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약금 산정이 불분명할 경우 위약금을 가맹비의 50%로 산정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동의없이 가맹계약 제11조를 위반하여 경업을 할 경우 위약벌금으로 위반이 해소되는 날까지 매1일 당 금삼십만원(W300,000)을, 제19조 제1항의 필수적 물품에 대한 자점매입을 할 경우 위약벌금으로 매 적발 건당 금이십만원(W200,000)을 당사에게 본 조의 위약금과 병과하여 추가로 지급합니다.

- 귀하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계약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에 의한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중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용 1일당 이십만원(₩200,000)의 위약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4]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4일 내외	-
가맹희망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1일	없음
입지 선정	- 입지의 적격 여부 검토	4일	없음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조건 협의	1일	없음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계좌로 예치	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 8-9페이지 참고
점포실측 /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정보공개서 9페이지 참고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인테리어 시공, 기계 및 장비 설치	25일	
교육 실시	-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	5일	인테리어 기간 중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최종리허설	1~3일	가오픈
개점 행사	- 가맹점 영업시작	D-day	오픈행사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추정으로 잠정한 일정이며, 협의 과정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증감됩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바닥면적 99㎡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같은 평수라도 점포의 형태, 노후 정도, 구조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

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시공일로부터 6년이 도래한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 ※1참조 <분할지급 시 절차> ○ ※2 참조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2.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경영 지도	1) 광고, 판촉 활동에 관한 지도 2) 물품 등의 관리, 재고관리 업무에 관한 지도 3) 상품 판매소구점을 창출하는 방법과 신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경영지도 4)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도내용, 기간, 인력파견 현황,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 파견 결정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계약서 제23조 참고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조박사 소머리국밥] 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이론교육 0.5일 실습교육 2.5일	강의 및 실습교육	오픈 전	
수시 교육	CS, 신메뉴, 매장관리 등	실습교육	필요에 따라	필요 시 당사에서 통지
특별 교육	필요 시	이론, 실습교육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 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최초 교육의 경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오픈이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조박사 소머리국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최초 교육	1일(6시간 이상)	2,2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교육 일정에 따라 다름	실비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 교육비는 2인 기준입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원 또는 직계가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오픈(개업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및 보수 교육에 불참할 경우 가맹점 운영권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인천	청라점	인천시 서구 담지로 104번길 28, 1층(청라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 고
약 9년 6개월 (3,476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526,811	세무신고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32-223-923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